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25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신청사 안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시민청(市民廳)”을 개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청 관람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특별전 등에 대해서는 시민청운영자 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안 제4조).
- 시민청 안에서 흡연, 음주,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퇴관조치를 함(안 제7조).
- 나눔장터,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시민청 전시실 등을 대관할 수 있음(안 제8조).
-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제17조).
 - 구성 : 10명~15명,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자문사항 :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
- 시민청의 운영·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관람시간·휴관일·대관·관람료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2013년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편성 예정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개선권고)
 - 무료관람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토록 하여 반영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기 타
 - (1) 입법예고(2012.8.23 ~ 9.13)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신청사 안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시민청”을 개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조례안임.
- 동 조례안의 제출은 2012년 6월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되고, 2012년 7월 30일 시장방침 제245호로 정해진 「시민청 기본 운영계획」(시민소통담당관-11183)에 대하여 의회의 공식 추인을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임.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청의 관람 및 시설 이용,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미술관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박물관 조례”)와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시민청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과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복합문화시설이면서 시민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청을 전시시설로, 시민청 이용자들을 관람자로 한정짓는 표현은 시민청의 목적과 취지, 운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관람”을 “이용”으로 수정(18건)
안 제4조 제목,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2건, 안 제4조제3항,
안 제5조 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제목,
안 제6조 본문, 안 제6조제3호 2건,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1항제2호,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2건, 안 제19조제1항
- “전시”를 “전시, 공연, 행사”로 수정(3건)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 “전시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수정(3건)
안 제6조제3호, 안 제12조제1항 2건
- “전시”를 “사용”으로 수정
안 제9조제1항

○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제1조(목적)에서 “일반공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공중”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으로 순화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어려운 한자어로 구분되어 정비대상용어에 올라있음. 미술관 조례에서는 “시민”, 박물관 조례에서는 “일반공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일반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민청(市民廳)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이 간결할 뿐 아니라 시민 참여와 소통의 공간인 시민청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향에 더 부합한다 사료됨.

안 제1조 수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廳)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 이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란 표현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사 내 시설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으로 하는 것이 시민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동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전시실 등)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전시, 창작활동, 나눔장터,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문 규정과 시민청의 목적, 취지, 운영 방향에 맞는 표현이라 판단됨.
(미술관 조례 : “대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 제2조 수정 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동 조례안은 제3조에서 매주 월요일 휴관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휴관하지 않고 그 다음날 대체 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술관 조례와 박물관 조례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개관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 대체 휴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청과 미술관, 박물관의 휴관 규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 공통 :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안 제3조 수정 의견

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 안 제4조제2항에서 “전시”나 “특별전 등”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시민청의 기능을 편협하게 보거나 이용료 징수를 제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전시 외에 공연, 행사 등에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4조 수정 의견

제4조(이용료) ① 시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동 조례안과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에서 규정한 무료관람 대상은 9개가 공통사항이며, 박물관 조례는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동 조례안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추가되어 있음. 동 조례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안 제5조 수정 의견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0. (조례안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동 조례안 제6조에서 관람을 금지하는 대상은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와 유사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 “2. 위험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는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는 것이 중복된 표현을 걸러내어 조문을 매끄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6조 수정 의견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람의 금지

동 조례안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
<p>술에 취한 자 위험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술에 취한 자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술에 취한 자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 동 조례안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에 비하여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등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시민청이 갤러리 뿐 아니라 한마음장터, 정책카페, 이벤트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다만 그 표현에 있어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묶어 제7조 본문으로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간단명료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난무”는 “이곳저곳에서 마구 벌어지거나 나타남”,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땀” 등의 뜻으로, 어려운 한자어인데다 행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생략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7조 수정 의견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삭제>

행위의 제한

동 조례안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
<p>① 관람자는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p> <p>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p>	<p>① 관람자는 미술관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1. 흡연 또는 음주 행위</p> <p>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p> <p>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p> <p>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p> <p>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p>	<p>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p> <p>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p> <p>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p> <p>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 안 제8조제1항 “시장은 시민청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나눔장터, 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시민청의 목적과 취지, 운영 방향에 보다 잘 들어맞을 것이며, 안 제8조제3항 제2호 “다른 시민”은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로 표현해야 조례 전체의 일관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 수정 의견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대관허가”, “대관료”, “대관료 감면”, “대관자의 준수사항”,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의 조문은 미술관 조례, 박물관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됨. 다만 안 제9조제3항의 “시 회계 규정”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이라 판단됨.

안 제9조 수정 의견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12조 수정 의견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조례안과 같음)

- 마찬가지로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 등의 조문 또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임. 다만 동 조례안 제14조(위원회 구성)제2항제1호 “디자인, 전시기획, 공연기획,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시민청의 목적과 취지,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4조 수정 의견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 4. (조례안과 같음)

③ ~ ⑤ (조례안과 같음)

- 그 밖에 제18조제3항에서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수정해야 중복된 표현을 방지하고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안 제18조 수정 의견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조례안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안 제19조 수정 의견

제1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조례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시민청의 청(聽)자가 들을 청(聽)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신조어가 아닌지.

답변 :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공연, 행사, 정책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청(聽)자를 썼음. 처음에는 어감이 이상할 수 있지만 BI 만들 때 청(聽)자의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등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질의 : 서울시 청사가 여러 곳이므로 공간을 특정해야 함. 서울시 '주된' 청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된' 이란 두 글자를 추가해야 함.

답변 :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함.

질의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향후에도 이런 표현은 고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에 제안해 주기 바람.

답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질의 : 시민 참여도 중요하지만 업무공간도 부족한데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야 하는지 계속 의구심이 듦.

답변 : 다른 공공청사도 알아봤는데 지하층에 업무공간을 두는 곳은 찾기 어려움. 설계할 때부터 지하 1, 2층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준비했음. 앞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질의 : 시사편찬위원회 저작물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보관하지 못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은가. 신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 상의해 주기 바람.

답변 : 잘 알겠음.

질의 : 시민청 내의 편의시설 운영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의 배려 등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자금력보다는 공공성에 배점을 더 주도록 할 계획임.

질의 : 수정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음.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는 철저한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좀더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고 의원님들이 잘 다듬어 주셔서 감사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시민청의 목적과 취치, 운영방향에 맞도록 조문을 다듬고, 휴관 규정을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과 일치시킴.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25
----------	---------

제안연월일 : 2012년 10월 12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청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향에 맞도록 조문을 다듬고, 휴관 규정을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일반공중”을 “일반인”으로 하고, “시민청(市民廳)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을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으로 하며,
-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으로 하고,
- 안 제2조제2호 중 “공간(전시실 등)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전시, 창작활동, 나눔장터,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는 행위”를 “공간의 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로 하며,

- 안 제3조제2호 단서 중 “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 휴관한다”를 “휴관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 안 제4조 제목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 안 제4조제1항 중 “관람료는”을 “이용은”으로 하고,
-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자가 시민청 내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등”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며, “관람객으로부터”를 “이용자로부터”로 하고,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 안 제4조제3항 중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고, “전시”를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며,
- 안 제5조 제목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 안 제5조제1항 중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 안 제5조제2항 중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목 “관람의 금지”를 “이용의 금지”로 하며,
- 안 제6조 본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고,
- 안 제6조제2호 중 “위험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으로 하며,

- 안 제6조제3호 중 “전시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고, “관람질서”를 “이용질서”로 하며, “관람금지”를 “이용금지”로 하고,
-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고성, 난무 등”을 “고성 등”으로 하며, “관람자”를 “이용자”로 하고,
-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본문을 신설하여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 안 제8조제1항 중 “자체전시”를 “운영”으로 하고, “나눔장터, 문화예술발전 등”을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하며, “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활동 등”을 “전시, 공연, 행사 등”으로 하고,
-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다른 시민”을 “이용자”로 하며,
- 안 제9조제1항 중 “전시일”을 “사용일”로 하고,
- 안 제9조제3항 중 “시 회계 규정”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며,
- 안 제12조제1항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하고,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며, “대관전시”를 “대관”으로 하고, “전시작품”을 “시설물 또는 작품”으로 하며,
- 안 제14조제2항제1호 “디자인, 전시기획, 공연기획,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 안 제14조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하며,
- 안 제18조제2항 중 “관람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관람료”를 “이용료”로 하며,
- 안 제18조제3항 중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 안 제19조제1항 중 “관람자”를 “이용자”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廳)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료) ① 시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료이용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안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정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廳)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u>일반공중이 시민청(市民廳)의 전시품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廳)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u>일반인이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u>공간(전시실 등)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전시, 창작활동, 나눔장터,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u> 3. (생략)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u> 2.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u>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u> 3. (조례안과 같음)
<p>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u>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 휴관한다</u>) 3. (생략) 	<p>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u>휴관하지 아니한다</u>) 3.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관람료) ① 시민청의 <u>관람료</u>는 무료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자가 시민청 내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등에 대해서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에 따른 <u>관람료</u>는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p>	<p>제4조(이용료) ① 시민청의 <u>이용</u>은 무료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에 따른 <u>이용료</u>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p>
<p>제5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관람료</u>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u>무료관람</u>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이용료</u>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10. (조례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u>무료이용</u>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관람</u>을 금지한다.</p> <p>1. 술에 취한 자</p> <p>2. <u>위험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u>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p> <p>3. 그 밖에 <u>전시품</u> 등의 보호 또는 <u>관람질서</u> 유지를 위해 시장이 <u>관람금지</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이용</u>을 금지한다.</p> <p>1. 술에 취한 자</p> <p>2. <u>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u>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p> <p>3. 그 밖에 <u>시설물 또는 작품</u> 등의 보호 또는 <u>이용질서</u> 유지를 위해 시장이 <u>이용금지</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조 례 안	수 정 안
<p>제7조(행위의 제한) ① <u>관람자는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u>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u>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u></p>	<p>제7조(행위의 제한) <u>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u>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u> <p>② <삭제></p>
<p>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시민청의 <u>자체전시</u>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나눔장터, 문화예술발전</u> 등에 기여할 수 있는 <u>작품전시, 창작, 문화예술 활동</u>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그 밖에 시장이 <u>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p>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시민청의 <u>운영</u>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시민 참여와 소통</u>에 기여할 수 있는 <u>전시, 공연, 행사</u>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u>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p>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전시일 전일까지</u>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시 회계 규정</u>을 준용한다. 	<p>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사용일 전일까지</u>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p> <p>② (생략)</p>	<p>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p> <p>② (조례안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디자인, 전시기획, 공연기획,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p> <p>3. ~ 4.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p>1.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p> <p>3. ~ 4. (조례안과 같음)</p> <p>③ ~ ⑤ (조례안과 같음)</p>
<p>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관람시간, 휴관일, 대관, 관람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p>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청 <u>관람자</u>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청 <u>이용자</u>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廳)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시민청(市民廳)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시민청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65세 이상의 어르신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9. 여성결혼이민자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시민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에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민청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민청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민청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청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시민청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시민청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청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